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2
----------	-----

2023. 1. 19.(목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6일

-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조덕진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「지방세법」인용조항 수정(안 제6조)  
(현행) 「지방세법」제10조제4항 → (개정) 「지방세법」제10조의6제4항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라,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에서 인용하는 「지방세법」 제10조제4항이 「지방세법」 제10조의6 제4항으로 개정되어, 이를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<참고 : 지방세법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비교>

지방세법 개정 전	지방세법 개정 후
<p>제10조(과세표준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</p> <p>⑤ ~ ⑧ 생략</p>	<p>제10조(과세표준의 기준)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(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

지방세법 개정 전	지방세법 개정 후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 ① ~ ③ 생략</p> <p>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</p>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조제4항”을 “법 제10조의6제4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과점주주의 신고) <u>법 제10조제4항</u>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 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6조(과점주주의 신고) <u>법 제10조의6제4항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

### □ 지방세법

[시행 2022. 1. 1.] [법률 제18655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**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⑤**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“과점주주”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(법인이 「신탁법」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登記·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)을 취득(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**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 ④**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10조,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, (중략)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: 2023년 1월 1일